

2026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

2026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6일

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구분	분야	인원	직무내용	채용필요성
기간제	골프장 운영 및 환경관리	4명	파크골프장 운영 및 환경정비	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필요인력 채용

※ 채용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
2 근무조건

분야	보수	근무기간	근무요일·시간	근무지
골프장 운영 및 환경관리	시급 12,010원	26.5.1 ~ 12.31 [약8개월]	주5일 / 07시~20시 (주 5일·일 8시간) ※ 근무일시간 협의	미단시티 체육공원 파크골프장

※ 사업장 운영에 따라 근무시작일, 근무지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초과근무, 휴일(토·일 및 공휴일)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.

3

응시자격

- 학력·성별 : 제한 없음
- 응시연령 : **18세 이상** *면접시험일 기준
- 거주지 :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**인천광역시**로 되어 있는 자
- 우대사항
 - PC사용 가능자, 파크골프 지식이 있는 자
 - 취업지원 대상자

※ 우대사항(취업지원 대상자) 적용대상
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(취업지원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
-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(취업지원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

※ **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 제도는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%(1명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**

- 응시 결격사유 :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*면접시험일 기준
 -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**비위면직자**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제1항제3호(결격사유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6호 준용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-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,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① 법원 판결
 - ② 「치료감호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 - 6의2.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」 제11조(결격사유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이 될 수 없다.
- 「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」 제33조(정년)
-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 -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

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4

시험절차 및 방법

*시험 일정은 예정 사항으로 공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① 원 서 접 수

- 접수기간 : **2026. 4. 7.(화) ~ 4. 15.(수)**
(단, 접수시작일은 09:00부터, 마감일은 18:00까지)
- 접수방법 : **온라인 접수** 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- 접 수 처 :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icjgss.or.kr>)
- 작성항목 : 지원사항, 인적사항 및 자기소개
- 제출서류
 - 주민등록초본 1부.
 - 취업지원 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. (미제출시 가점 미적용)
※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, 최근 1년 포함 주소 변동사항 표시

② 서 류 심 사

- 기 간 : **2026. 4. 16.(목)**
- 심사내용 : 응시원서 심사를 통한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
- 대 상 :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응시원서 심사를 통한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
- 서류심사 합격자, 이의신청, 면접시험 안내 공고 : **2026. 4. 17.(금)**

③ 면 접 시 험

○ 일 자 : 2026. 4. 23.(목)

※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면접일시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.

○ 대 상 : 서류심사 합격자

○ 장 소 :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 3층 세미나실

(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81, 스크린골프장 입구 3층)

○ 준 비 물 : 신분증(미소지 시 응시 불가)

○ 주의사항 : 면접 참석시간을 준수하여 대기 장소로 입실하시고, 면접참석시간에 늦을 경우 별도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며,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.

○ 합격인원 : 4명

※ 채용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
○ 시험내용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□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| □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|
| □ 의사발표와 정확성과 논리성 | □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□ 응용력, 창의력, 의지력, 기타 발전가능성 | |

○ 합격기준

- 인사규정 시행내규 [별지 제3호] 면접시험 평정표 준용하여 **고득점자순 결정**

- 과락 : 2명 이상 위원이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10점 이하(“하”)로 평정시

○ 동점자 처리순서 : ① 취업지원 대상자

② 해당 분야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

③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

○ 예비합격자 선발

- 인 원 : **총 3명**

- 유효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

※ 예비합격자 근무기간은 사업종료 잔여기간입니다.

- 선발기준 : 면접시험 과락 제외자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순 결정

- 임용사유 : 아래 사유로 인해 결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확인
-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취소
- 면직(의원면직 등)

○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: **2026. 4. 24.(금)**

5 채용 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채 용 공 고	2026. 4. 6.(월) ~ 4. 15.(수) [9일]	구 및 공단 홈페이지 등 ※ 초일 불산입
원 서 접 수	2026. 4. 7.(화) ~ 4. 15.(수) [9일]	공단 홈페이지
서 류 심 사	2026. 4. 16.(목)	
면접안내 공고	2026. 4. 17.(금)	
면 접 시 험	2026. 4. 23.(목)	공단본부 다목적강당
합 격 자 발 표	2026. 4. 24.(금)	공단 홈페이지

※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6 응시자 주의사항

-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.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전체 채용절차에서 응시자격을 제외한 학력, 연령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신체적 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
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합격 결정과 관련있는 각종 증빙서류(필수 자격사항 관련 서류)는 서류전형 시 제출하며,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데 사용 후,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뒷자리를 ‘마스킹’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하여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, 본인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.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가능하며,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응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면접시험시 반드시 **신분증**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 - ※ 모바일신분증,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 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**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**합니다.
- 응시자의 **부정 합격 확인 시에는 합격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,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제출방법 : E-메일 접수(icjgss@icjgss.or.kr)
- 채용비위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(032-850-14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별첨 1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.
2. 채용시험 이의신청 1부. 끝.

【별첨1】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【별첨2】

채용시험 이의신청

이의신청인	성 명	수험번호
	연락처	E-mail

이의신청 내용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작성 참고사항></p> <p>○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라며,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확인답변 불가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질의 또는 문의사항- 채용시험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-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정보 요구- 면접관 개인정보 등
---------	--

본인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